1. 전용주거지역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 필요한 지역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주거지역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1. 4층 이하의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주거지역을 말한다.   
         1. 단독주택, 빌라 등 낮은 층의 건물들의 주거지역(건폐율 60%, 용접률 100~200%이하 기준 적용)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1. 18층 이하의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주거지역을 말함.   
         1.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이다.(건폐율 60%이하, 용접률 150~250%이하 기준)
   3. 제3종 일반주거지역   
      1. 층수제한 없이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지역입니다.
3. 준주거지역   
   1.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이다.(건페율 70%이하, 용적률 200~500%이하)